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예비비 지출 현황

- 지출결정액 : 2억 5,574만 5천원
- 지 출 액 : 2억 5,436만 5천원
- 이 월 액 : 해당 없음.
-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 138만원

〈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255,745	254,365	254,365	0	1,380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사무관리비	229,807	229,807	229,807	0	0
	공공운영비	4,438	4,438	4,438	0	0
	시설비	21,500	20,120	20,120	0	1,380

II. 검토의견

- 행정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청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예비비(2억 5천 4백만원)로 지출하였음.

〈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255,745	254,365	254,365	0	1,380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사무관리비	229,807	229,807	229,807	0	0
	공공운영비	4,438	4,438	4,438	0	0
	시설비	21,500	20,120	20,120	0	1,380

〈 분향소 설치·운영 개요 〉

- 분향소 명칭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 설 치 일 자 : '24.12.30.(월) 24시
- 운 영 기 간 : '24.12.31.(화) ~ '25. 1.10.(금) 매일 08:00~22:00
- 규 모 : 가로 10m × 높이 4m × 너비 5m
- 장 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착륙 중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 179명 사망한 대형 참사임.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정부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12월 29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였고, 이에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다는 조치가 행해졌음.¹⁾

- 예비비는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예비비의 집행 조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항공기 사고는 법령상 ‘사회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재난 상황에서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 지원,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 사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분향소는 사고 직후 설치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됨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요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301호, '24.12.29.)에 따른 국가적 재난 대응 사무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 기관인 중앙정부의 예산(국비)으로 지원되거나 보조되어야 함에도 전액 시비(예비비)로 지출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예비비의 사용 요건 충족 여부 및 국가사무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정부의 요청(공문)에 따라 서울시가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나, 정부의 협조 요청이 법령이 정한 지방비의 부담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시적 추모는 재난 수습 및 사회적 회복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재난 대응·복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바, 예비비의 집행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301호, '24.12.29.) 공문 행정사항에서 “소요 경비는 지자체 자체 예산(예비비 등)으로 충당 협조”라고 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법」 제137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는바, 향후 유사한 국가적 재난 대응(분향소 설치 등)에 대하여 국비 지원 또는 보전 방안 없이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국에서는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 하고, 향후 협조 요청 단계부터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